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변경내용(요약)

□ 배경

-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 강화
 - * ('21.4.12) 중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248호령)과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249호령) 발표, '22.1.1 시행예정이며, 기존 관련 규정은 폐지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주요 변경 내용
해외생산업체 등록범위 확대	○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 (변경) 모든 식품 ⇒ 모든 對중국 생산, 가공, 저장, 수출식품군의 직접 관리 가능
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 서류	○ 등록대상 품목(업체)별 신규 신청서류 추가 및 일부 등록서류 폐지 - (신규) 소재국가 주관당국의 추천서 등 / (폐지) 동식물 전염병 발생상황 등 ⇒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
유효기간 연장 및 등록변경	○ 유효기간 연장 : (기존) 허가 후 4년 → (변경) 5년 ○ 연장등록 기한 : (기존) 만기도래 1년전까지 → (변경) 만기전 3~6월내 ○ 등록사항 변경신청 :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 변경 또는 수출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변경시 재등록 신청(수시 가능) ⇒ 수출업체의 등록관련 편의제고(유효기간 연장, 등록기한) 및 주요 사항 관리 강화(등록사항 변경신청)
평가, 심사	○ (기존) 서면, 현장 검사 → (변경) 영상 검사 추가 ⇒ 코로나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 회피 및 다양한 검사 가능
포장표시	○ (기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기 → (변경) 내·외 포장 모두에 중국 또는 수출국 등록번호 표기 ○ (기존) 보건, 특수 식품에 스티커 부착 가능 → (변경) 인쇄로만 가능 ⇒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선진관리체계 구축
등록 말소	○ (신규) 등록연장을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가능 ○ (신규) 수출국 관리감독 실시, 미부합시 시정시까지 수출중단 요구 가능 ⇒ 대 중국 수출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중국측 영향력 확대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주요 변경내용

1. 검토 배경

-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 강화
 - * 중국 수입식품 규모(억 달러) : ('12) 397 → ('16) 553 → ('18) 725 → ('19) 908
- 중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248호령)과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249호령) 발표('21.4.12), 시행('22.1.1) 예정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발표 화면)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

2. 주요 변경내용

□ 해외생산기업 등록범위 확대

-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 (변경) 모든 식품
 - (248호 7조 해당 품목) : 수출국 정부*가 중국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 (신규) 위 외 모든 품목 : 자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중국해관에 서류 등록
- * 수출국 정부 : 해외생산기업 소재국가에서 식품생산, 안전위생을 감독관리하는 정부부서
⇒ 모든 대 중국 수출식품군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 해당 (식품첨가제,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용 설비, 도구 등 관련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는 제외)

(248호령 제7조) 다음과 같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의약품**

☞ (변경 의미)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서 품목 대폭 확대

(248호령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변경 의미) 기존 등록 신청을 하지 않던 모든 품목도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 필요

□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서류

○ 등록대상 품목(업체)별 신규 신청서류 추가 및 일부 등록서류 폐지

* 등록 폐지 서류 : 수출국 동식물 전염병 발생 상황, 수의 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잔류,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및 위생요구 등에 관련된 법규 및 법률, 수출국 식품위생 관련 기구 조직도, 인원, 관련 법규 및 법률 등 서면 자료

⇒ 중국 정부의 수입관리 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

(248호령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1) (신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2) (신규)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 (3) (신규)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4) (기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 (5) (기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과 방호체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체 공장,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그리고 제조공정 설명 등

(248호령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규) 업체 등록 신청서
- (2) (신규)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3) (신규)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248호령 제10조) 업체 등록 신청서 내용은 **업체명, 소재 국가(지역), 제조장소 주소, 법정대표인, 연락처,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을 신청한 식품 유형, 제조 유형, 제조 능력 등** 정보를 포함한다.

☞ (변경 의미) 수출업체의 법적 근거를 강조하기 위해 신규 요구서류 추가, 전염병, 위생 등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심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관련 서류 폐지

□ 유효기간 연장 및 등록변경

- 유효기간 연장 : (기존) 허가 후 4년 → (변경) 5년
- 연장등록 기한 : (기존) 만기 도래 1년 전까지 → (변경) 만기 전 3-6월
- 등록사항 변경 :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 변경 또는 수출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변경(수시 가능)

* 단,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고, 기 등록번호는 무효 처리

⇒ 수출업체의 등록 관련 편의 제고 및 주요 사항 관리 강화

(248호령 제1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확정한다.

(248호령 제20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연장 시, 등록 유효기간 **만기 전 3~6개월 내**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제출한다.

등록 연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 연장 신청서
 - (2) 등록 요구에 지속 부합 확인서
-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업체에 등록 연장을 허가하고 등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248호령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정보 변경 시,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 도표
- (2) 정보 변경 유관 증명 서류

해관총서의 평가 결과가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을 허가한다.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인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 중국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

☞ (변경 의미) 유효기간 연장 및 연장등록은 기존보다 비교적 완화, 단, 제조 장소, 법정 대표, 수출 해당 국가 등록번호 변경 시 반드시 신규 등록하도록 강화

□ 평가와 심사

○ (기존) 서면 및 현장검사 → (변경) 영상검사 추가

⇒ 코로나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 회피 및 식품별 위험도나 난이도가 다른 점을 감안 다양한 검사방법 시행 가능

(248호령 제13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서면 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및 여러 조합**으로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초과 평가, 심사인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상 평가·심사 업무의 개시를 협조해야 한다.

□ 포장표시

○ (기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기 → (변경) 수출식품의 내·외포장 모두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수출국 정부의 허가 등록번호 표기

*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라 수출국 정부 등록번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수출국 등록번호로 수출국 내수와 수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일부 레이블 교체 등으로 가능하였으나, 보건식품(건강기능)과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반드시 인쇄로만 가능하도록 변경

* 특수선식용 식품 :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

(248호령 제15조)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249호령 제30조) 수입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반드시 최소판매 포장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등록 말소

○ 등록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 및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등록 말소 관련 조건 강화

○ 수출국 정부가 대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시까지 수출 중단 요구

⇒ 수출국 정부의 대 중국 식품 수출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 요구

(248호령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며 대외 공개한다.

-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 (3) 본 규정의 제5조 제(2)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48호령 제22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미 등록된 업체에 유효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이미 등록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에 부합하게 독촉해야 한다.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 시,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여 등록 요구에 부합할 때까지 시정하고 유관 업체의 對 중국 식품 수출을 중단한다.

(248호령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에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대외 공고한다.

- (1) 업체 자체의 원인으로 수입식품 중대 식품안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 (2) 對중국 수출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중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 (3)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對중국 수출 식품이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4) 시정 후에도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허위 서류를 제고, 유관 상황을 숨기는 경우
- (6) (신규) 해관총서의 재심사 개시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도용하는 경우

붙임 : 1. 등록관리 규정 관련 Q&A 1부

2.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248호령) 1부

3.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249호령) 1부. 끝.

[붙임1]

* 본 Q&A는 '21.8.31 aT에서 주최한 중국수입제도 변경 웨비나에서 나온 주요 질문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상당 부분 해관총서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확정될 전망입니다. 추후 해관총서의 규정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웨비나 영상은 aT유튜브 계정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관리 규정 관련 Q&A(aT상하이지사)

구 분	주 요 질 문
등록번호 표기 관련	<p>Q1.내외포장재 등록번호는 패키지 상 인쇄된 상태만을 허용하는 것인가요? 내외포장재에 등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라벨 부착은 비허용인가요?</p> <p>A1. 일반식품의 경우 스티커 부착으로도 가능하고, 보건/특수선식용식품(영유아 조제분유 등)은 인쇄로만 가능합니다.</p> <p>Q2-1.해외제조기업등록번호를 내외포장재에 기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매단위를 불문하고 모든 패키지에 기재하라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멀티팩 단위 판매일 시 멀티팩에만 기재하고 멀티팩 내 날개제품에는 미기재하는 것이 허용될까요?)</p> <p>Q2-2.내/외 포장재 기재라고 되어있는 부분 중 외포장지는 박스를 포함하는건가요? 단순 이송용으로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박스에도 기재되어야 하나요?</p> <p>Q2-3.등록번호 포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상자에 스티커가 30개 들어있는 경우 스티커도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나요? (일반 락토피트 유산균과 같이 30포(스티커)이 한 상자에 담겨있는 경우)</p> <p>Q2-4.1차 포장(판매단위) / 2차 포장(5개묶음, 판매단위) / 3차 포장(판매단위X, 단순 이송박스) 이때 1, 2차는 표시를 하는걸로 이해했는데 3차인 단순 이송박스에도 표시를 해야 되나요?</p> <p>Q2-5.내외포장재를 개별포장-내부포장(속포장)-외부포장과 같이 구분해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A2. 본 등록규정에 언급된 “내·외포장” 관련 상세한 설명은 아직 해관총서 피드백이 없으니 세부 가이드라인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p> <p>Q3. 등록심사기간, 패키지 상 등록번호를 인쇄하는데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3개월에 마칠 수 있나요?</p> <p>A3. 처음으로 모든 해외생산업체에 관한 등록규정이라 등록 심사</p>

구 분	주 요 질 문
	<p>기간 얼마나 걸릴지는 해관총서에서 공지하지 않았습니니다. 추후 해당 세칙 내용 발표되면 현재 제기된 많은 문제에 관한 답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p>
신청접수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관련	<p>Q4. 정부추천등록일 경우, 중국정부의 심사대행자가 CCIC, 기업 자체등록일 경우, 위탁대리인으로 CCIC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p> <p>A4. 해관총서에서 아직 정부 추천등록 심사대행사 지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기업자체등록일 경우 위탁대리인에 관한 상세한 요구나 자격에 관해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태이니 해당 세칙이 발표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유예기간 관련	<p>Q5. 유예기간 관련 질문</p> <p>A5. 유예기간에 대한 해관총서의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니다. 현재 버전에 따르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적혀있습니다.</p>
등록유형 관련	<p>Q6. 해외생산기업 추천등록 18종의 식품유형이 국내 식품유형으로는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요?</p> <p>A6. 추천등록 18종 유형이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해당 설명이 있을 거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18종 식품유형이 국내 어떤 식품유형에 매칭되는지는 제품마다 다른 상황이니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별도로 aT현지화자문기관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Q7. 한 공장에서 18종에 해당하는 식품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식품유형 등 여러 유형을 모두 생산하고 있을 때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p> <p>A7. 18종에 해당하는 식품은 추천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고 자체등록신청은 따로 신청 필요합니다.</p> <p>Q8. 일반식품 보건의약품 모두 생산하면, 자체등록 및 주관당국 추천 2종류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번호가 2종으로 나오나요?</p> <p>A8.네, 일반식품은 자체등록, 보건의약품은 추천등록 2가지 모두 따로 신청 필요합니다. 원칙상, 두 가지 다른 통로로 신청해야 하니 아무래도 번호가 2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해관총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Q9. 생산기업 등록번호는 한 회사가 여러 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각</p>

구 분	주 요 질 문
	<p>공장별로 발급이 되나요? 또 공장 내에서도 식품 유형이 다른 경우, 유제품과 탄산음료 같은 경우 각 다른 번호로 관리하는 건가요?</p> <p>A9. 공장이 여러 곳이면 각 공장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식품유형이 다를 경우, 원칙상 유제품은 추천등록, 탄산음료는 자체 등록 각각 신청 필요한데 최종 어떻게 진행할지 해당 내용은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Q10.신청하는 경우, 사이트에는 어떤 유형의 식품을 생산하는지를 입력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해당 유형에만, 번호를 인쇄 가능하죠?</p> <p>A10.현행 유제품, 육제품, 수산물 등 부류 제품 등록방식 참조하면 신청사이트에 생산하시는 제품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등록번호 인쇄, 대여, 양도, 매매, 도용 불가이니 신청하신 제품 부류에만 표시 가능합니다.</p>
신청 방식 관련	<p>Q11.등록하는 사이트나 신청양식이 있나요?</p> <p>A11.등록사이트나 신청양식 관련 내용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대다수 질의내용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p> <p>Q12.코로나 시기인데, 중국에서 한국공장에 오셔서 심사를 진행 하나요? 한국 식약처에서 심사원을 섭외를 해주시나요? 기존 유제품 공장등록은 어렵다고 하는데,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 되나요?</p> <p>A12.추천등록일 경우 서류검사, 현장검사, 영상검사 및 3종 조합으로 진행될 겁니다. 유제품 공장등록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Q13.식약처 추천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록되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한지 알 수 있나요?</p> <p>A13.처음으로 모든 해외생산업체에 관한 등록규정이라 등록심사 기간 얼마나 걸릴지는 해관총서에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p>
기 타	<p>Q14.올해 안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등록번호 없이 수출이 가능한가요?</p> <p>A14.변경규정은 22년 1월부터이니 올해 수출제품은 적용받지 않습니다</p> <p>Q15.가이드라인은 언제 나오는지요?</p> <p>A15.가이드라인 발표일자는 해관총서에서도 피드백해주지 않았습니다.</p> <p>Q16.<해관총서 등록관리 관련 세부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p> <p>A16.원문링크는 하기와 같으며 번역본은 [붙임2]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p>

[붙임2]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248호령)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라고 함)의 등록관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식품첨가제, 식품 유관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해관총서가 함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2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5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조건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해관총서 동등 효력(等效性)의 평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2)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당국의 유효 감독관리 하에 있다

(3) 효과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와 방호체계를 세우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이루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 식품이 중국의 유관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한다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검토하고 정한 유관 검사, 검역의 요구에 부합한다

제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과 업체 신청 등록을 포함한다. 해관총서는 식품 원료의 유래, 제조·가공 공정, 기존 식품안전 수치, 소비 대상, 섭취방법 등 요소의 분석을 근거로 하고 국제관례와도 결할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방식과 신청서류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 또는 모 유형 식품의 리스크에 변화가 생긴 증거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식품의 해외생산업체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다음과 같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육류와 육가공품, 케이싱, 수산물, 유(乳)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건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特殊膳食食品), 보건의약품.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1) 수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2)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 (3)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4)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과 방호체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체 공장,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그리고 제조공정 설명 등.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업체 등록 신청서
- (2)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3)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제10조 업체 등록 신청서 내용은 업체명, 소재 국가(지역), 제조 장소 주소, 법정 대표인, 연락인,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을 신청한 식품 유형, 제조 유형, 제조 능력 등 정보를 포함한다.

제11조 등록 신청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고 유관 국가(지역)가 중국과 등록 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쌍방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완결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및 여러 조합으로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초과 평가, 심사인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상 평가·심사 업무의 개시를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을 근거로 요구에 부합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등록을 허가하고 중국등록번호(在華注冊編號)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등록이 불가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제1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해관총서에서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리스트를 함께 대외 공개한다.

제3장 등록관리

제18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요구 지속적 부합 여부 상황에 대해 재심사를 개시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초과 평가·심사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정보 변경 시,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 도표
- (2) 정보 변경 유고나 증명 서류
해관총서의 평가 결과가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을 허가한다.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인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 중국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

제20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연장 시, 등록 유효기간 만기 전 3~6개월 내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제출한다.

- 등록 연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 연장 신청서
 - (2) 등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다고 승낙하는 성명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업체에 등록 연장을 허가하고 등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며 대외 공개한다.

-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 (3) 본 규정의 제5조 제(2)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미 등록된 업체에 유효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이미 등록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에 부합하게 독촉해야 한다.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 시,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여 등록 요구에 부합할 때까지 시정하고 유관업체의 對 중국 식품 수출을 중단한다.

제23조 해관총서에서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더 이상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 시, 규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시정 기간 동안 유관 업체의 식품 수입을 한시적 중단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 등록한 업체가 한시적 수입 중단되는 경우, 주관 당국은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는 것을 감독해야 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 보고서와 등록 요구에 부합하다는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자제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등록 신청한 업체가 한시적 수입 중단되는 경우,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해야 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 보고서와 등록 요구에 부합하다는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업체 시정 정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합격 시, 유관 업체의 식품 수입을 회복한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에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대외 공고한다.

- (1) 업체 자체의 원인으로 수입식품 중대 식품 안전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
- (2) 對중국 수출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중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 (3)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對중국 수출 식품이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4) 시정 후에도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허위 서류를 제출, 유관 상황을 숨기는 경우
- (6) 해관총서의 재심사 개시와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도용하는 경우

제4장 부칙

제25조 국제기구나 對중국 식품 수출하는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전염병 발생을 통보, 또는 유관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과정에서 전염병, 공중 위생사건 등 엄중한 문제 발견 시, 해관총서는 해당 국가(지역)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이 기간에 해당 국가(지역) 유관 식품업체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본 규정 중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에서 식품생산업체 안전 위생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를 말한다.

제27조 본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2012년 3월 22일 舊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순제145호에서 반포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 순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은 폐지된다.

[붙임3]

중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249호령)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인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 안전법>과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수출입 식품 제조·경영 활동
- (2) 해관이 수출입 식품 제조·경영자 및 수출입 식품 안전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 관리

제3조 수출입 식품의 안전 업무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 리스크 관리, 전체 과정 컨트롤, 국제적으로 공동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수출입 식품 제조·경영자는 제조·경영하는 수출입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수출입 식품 제조·경영자는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 협정, 중국의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식품 수출입 제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며 수출입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사회와 대중에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 식품의 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 행정등급 해관은 관할지역내 수출입 식품의 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해관은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제7조 해관은 수출입 식품 안전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지식의 보급 업무를 개시한다.

해관은 식품안전 국제조직, 해외 정부기관, 해외 식품업계 협회, 해외 소비자협회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수출입식품 안전을 공동 다스리는 국면을 조성한다.

제8조 해관에서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은 유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2장 식품 수입

제9조 수입식품은 중국의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 협정에 특수 요구가 있는 것은 국제 조약, 협정서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의 위생행정부서에서 반포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유관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新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37조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의 新식품원료 위생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해관은 수출입상품 검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합격 평정을 실시한다.

수입식품의 합격평정에 포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국가(지역)[이하 “해외 국가(지역)”]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평가와 심사, 해외 제조기업의 등록, 수출입 업체의 서류등록(備案)과 합격보증, 입국 동식물검역 심사허가, 동봉된 합격증명서 검사, 해관신고 서류의 심사, 현장 심사, 샘플링검사 감독, 수입과 판매기록 검사 및 이 중 여러 사항의 조합.

제11조 해관총서는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개시할 수 있고 평가와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검역 요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 해관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국가(지역)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 (1) 해외 국가(지역)가 처음으로 모 유형(종) 식품의 對중국 수출을 신청하는 것
- (2)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동식물 검역 법률, 법규, 조직기구 등에 큰 조정이 생기는 경우
- (3) 해외 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가 對중국 수출 모 유형(종) 식품의 주요 수입 검사검역 요구 신청에 중대 조정이 생기는 경우
- (4) 해외 국가(지역)에 중대 동식물 전염병 또는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5) 해관이 對중국 수출 식품에서 엄중한 문제를 발견하고 동식물 전염병 또는 식품안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 평가 또는 심사를 개시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해외 국가(지역)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평가와 심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 확인이 포함된다.

- (1) 식품안전, 동식물 검역 관련 법률, 법규
- (2)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직기구
- (3) 동식물역병의 전염병 유행 상황 및 예방과 통제 조치
- (4) 질병 유발 미생물, 농약, 동물용 약품과 오염물질 등에 관한 관리와 통제
- (5) 식품의 제조·가공, 운송·창고 저장 단계의 안전·위생 통제
- (6) 수출식품의 안전감독 관리
- (7) 식품안전 예방, 추적과 리콜 시스템
- (8) 경보와 비상시스템
- (9) 기술 지원 능력
- (10) 동식물 전염병, 식품안전 유관 기타 상황

제14조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서면심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또는 이상 여러 가지 형식을 조합하여 평가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해관총서에서 모집한 전문가는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에서 제출한 신청서류, 서면 평가 설문지 등 서류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는데 심사내용은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과 유효성을 포함한다. 서류 심사의 상황에 따라 해관총서는 신청 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에서 부족한 정보 또는 서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서류 심사가 통과된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해 영상 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문제 발견 시, 유관 국가(지역)의 주요 담당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유관 국가(지역)는 평가와 심사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평가와 심사를 받는 국가(지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종료하고 유관 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1) 서면 심사 설문지를 받은 12개월 내에 피드백을 주지 않은 경우
- (2) 해관총서로부터 보충 정보와 자료 요청 통보 받은 3개월 내에 요구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또는 중대한 식품안전 사건이 돌발하는 경우
- (4) 중국 측의 영상검사 또는 현장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유효한 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5) 자발적으로 평가와 심사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1) 또는 (2)의 경우, 유관 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는 특수 원인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친 후 해관총서에서 다시 정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평가와 심사 완료 후,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받은 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에 평가와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 해관총서는 對중국 식품 수출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기업 리스트를 대외 공개한다.

제19조 對중국 식품 수출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이하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해관총서에 서류등록(備案)해야 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소재지 해관에 서류등록해야 한다.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는 서류등록 시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 리스트는 해관총서에서 대외 공개한다.

제20조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의 서류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지 60일 내에 서류등록 기관에 변경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해관총서에서 서류등록된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의 정보 착오 또는 서류등록 내용을 제 때에 변경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 기한 내에 해당 업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세워 식품명칭, 중량/규격, 수량, 제조날짜, 제조 또는 수입 로트번호, 유통기한, 해외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납품날짜 등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식품 유통기한 만료 후 6개월보다 짧아서는 아니 되고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것은 매출 후 2년 초과이다.

제22조 식품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해외 제조업체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하고 중점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안전 리스크 통제 조치 정황을 정리하고 집행
- (2) 식품이 중국의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정황

제2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식품 수입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활동의 정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사실대로 유관 정황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해관은 리스크 관리 수요에 따라 지정된 항구로의 식품 수입, 지정된 감독관리 장소에서의 검사 요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된 항구, 지정된 감독관리 장소 리스트는 해관총서에서 대외 공개한다.

제25조 식품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이 식품을 수입할 때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입국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27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입국 동식물 검역심사가 필요한 수입 식품에 대해 검역심사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수입업체는 무역계약서 또는 협의서 체결 전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해관은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 (1) 운송도구, 저장 장소가 안전·위생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 (2) 컨테이너 번호, 쉘 넘버, 내·외포장에 표기된 내용, 화물의 실제상황이 신고한 정보 및 동봉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 (3) 동식물성 식품, 포장물 및 칸 바닥 재료가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 (4) 내·외포장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 오염, 파손, 침수, 침투 등이 존재하는지
- (5) 내·외포장의 라벨, 표기 및 설명서가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는 지
- (6) 식품의 관능적 성상이 해당 식품이 갖춰야 하는 성상에 부합하는지
- (7) 냉동·냉장식품은 그 신선함의 정도, 중심온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 병리변화가 있는지, 냉동·냉장 환경 온도가 유관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콜드 체인의 온도 컨트롤 시설 작동이 정상인지, 온도 기록이 요구에 부합하는 지를 검사한다. 필요 시, 증자시험(蒸煮試驗)을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 해관은 연도 국가 수입식품 안전 샘플링검사 감독 계획과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감독 특별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한다.

제30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기는 중국의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중문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신선·냉동 육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내·외포장에 굳고 뚜렷하며 알아보기 쉬운 중문 및 영문 또는 중문 및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제조국가(지역), 제품명, 제조업체 등록번호, 제조 로트번호.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제조지(주/성/시까지 상세하게), 목적지, 제조날짜, 유통기한, 저장 온도 등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목적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동시에 수출국가(지역)의 공식 검사검역 표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수산품을 수입하는 것은 내·외포장에 굳고 뚜렷하며 알아보기 쉬운 중문 및 영문 또는 중문 및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상품 명칭과 학명, 규격, 제조날짜, 로트번호, 유통기한과 저장조건, 제조방식(바다 포획, 민물 포획, 양식), 제조지역(바다 포획 해역, 민물 포획 국가 또는 지역, 양식제품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제조·가공 관련 모든 기업(포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장·냉동 창고 포함)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주/성/시까지 상세하게), 그리고 목적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수입 보건식품, 특수선식용식품(特殊膳食用食品)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 포장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로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수입식품의 내·외포장에 특수표기의 규정이 있는 것은 해당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1조 수입식품이 항구에 도착한 뒤, 해관이 지정한 또는 인정한 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먼저 해관의 허락을 받고 해관이 요구한 필수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한 또는 인정한 장소는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32조 산적 벌크(大宗散裝) 수입식품은 해관총서의 요구에 따라 하역 항구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제33조 해관의 합격 평정에서 합격한 수입식품은 수입을 허가한다.

해관의 합격 평정이 불합격인 수입식품은 해관에서 불합격증명을 발행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관련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식품 수입업체가 이를 소각 또는 반송할 것을 해관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타 항목이 불합격일 경우, 기술처리를 거쳐 합격 평정 요구에 부합한다면 수입을 허가한다. 유관 수입식품이 규정한 시일 내에 기술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술처리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것은 식품 수입업체가 이를 소각 또는 반송할 것을 해관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4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이 중국 국내의 식품안전 우려를 초래하거나 해관이 수입식품 감독관리 실시 과정 중 불합격 식품을 발견, 또는 기타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해관총서와 수권 직속해관은 리스크 평가 결과를 의거로 관련 수입식품에 대해 샘플링검사 감독 비율을 높이는 등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해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샘플링검사 감독 비율을 높이는 등 통제 조치를 취한 후에 또 다시 불합격 수입식품 발견 시, 또는 수입식품이 엄중한

안전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해관총서와 수권 직속해관은 식품 수입업체가 로트별로 해관에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검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가 제공한 검사 보고서에 대해 대조 확인을 진행한다.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해 수입 중단 또는 금지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수출국가(지역)에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식품안전체계에 중대 변화가 생겨 對중국 수출 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2) 수입식품이 검역 전염병 병원체로부터 오염되었거나 또는 검역 전염병 전과 매개로 될 증거가 밝혀졌는데 효과적인 위생 처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3) 해관이 본 방법 제34조 제2항 규정의 수입식품 통제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다시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관련 항목이 불합격인 것을 발견할 경우
- (4) 해외 제조기업이 중국 유관 법률, 법규를 엄중하게 위반하는 경우
- (5) 기타 정보로 유관 식품에 엄중한 안전 우려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제36조 수입식품의 안전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해관총서와 수권 직속해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통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1) 본 방법 제34조 제1항 통제 조치를 실시한 식품이 규정한 내간, 로트 내에서 불합격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리스크 평가 기초가 해당 통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2) 본 방법 제34조 제2항 통제 조치를 실시한 식품이 수출국가(지역)에서 이미 예방 조치를 취하였고 해관총서의 리스트 평가 결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동식물 전염병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거나, 또는 이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날짜로부터 규정한 내간, 로트 내에서 불합격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리스크 평가 기초가 해당 통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3) 수입 중단 또는 금지 통제 조치를 실시한 식품이 수출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에서 이미 리스크 통제 조치를 취하였고 해관총서 평가결과, 요구에 부합한 것은 수입 중단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수입을 회복한 식품은 해관총서 평가 상황에 따라 본 방법 제34조 규정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식품이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63조와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수입,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리콜을 실시하며 유관 제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리콜과 통보 정황을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식품 리콜, 통보와 처리 정황을 소재지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식품 수출

제38조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수출식품이 수입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 조건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이나 협정에 특수 조건이 있는 것은 국제 조약, 협정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에 아직 표준이 없고 계약에도 요구가 없으며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 협정에 유관 요구가 없는 것은, 수출식품 제조업체가 해당 수출식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39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의 감독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 수출식품 원료 재배·양식장의 서류등록(備案), 수출식품 제조업체의 서류등록, 업체 심사, 서류 심사, 현장검사, 샘플링검사 감독, 항구 샘플링검사, 해외 통보 심사 및 여러 항목의 조합.

제40조 수출식품 원료 재배, 양식장은 소재지 해관에 서류등록해야 한다.

해관총서에서 일괄로 원료 재배, 양식장 서류등록 리스트를 대외 공개하고 서류등록 절차와 요구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1조 해관은 법에 따라 서면 심사, 현장 검사, 기업 심사 등 방식을 취해 서류등록 원료 재배, 양식장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다.

제42조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소재지 해관에 서류등록해야 하고 서류등록 절차와 요구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3조 해외 국가(지역)에서 중국이 이 국가(지역)으로 수출하는 수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해관총서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소재지 해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소재지 해관은 1차 심사 후 해관총서에 보고한다.

해관총서는 기업 신용, 감독관리 및 소재지 해관 1차 심사 상황을 결합하여 대외 추천 등록 업무를 개시하고 대외 추천 등록 절차와 요구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4조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추적 가능한 식품안전위생 통제체계를 설립, 보완하고 식품안전위생 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수출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과정이 지속적으로 중국 유관 법률, 법규, 수출식품 제조업체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 유관 법률, 법규와 유관 국제 조약, 협정에 특수요구가 있는 것은 해당 유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공급업체 평가제도, 입고 화물 검사 기록제도, 제조기록 파일제도, 출하검사 기록제도, 수출식품 추적제도와 불합격식품 처치 제도 등을 세워야 한다. 관련 기록은 진실하고 유효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식품 유통기한 만료 후 6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관 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수출식품의 포장과 운송방식이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46조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운송포장에 제조업체 서류등록번호, 제품명칭, 제조 로트 번호와 제조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 또는 계약에 특수 요구가 있는 것은 제품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수출식품 제조업체는 직속해관의 동의를 거친 후 전항에서 규정한 표기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7조 해관은 관할 구역 내 수출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안전 위생 통제체계 운영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감독검사는 일살 감독검사와 연도 감독검사를 포함한다.

감독검사는 서류심사, 현장검사, 기업심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수출식품 해외 통보 심사, 샘플링검사 감독, 현장검사 등 업무와 결합하여 개시할 수 있다.

제48조 수출식품은 법에 따라 생산지 해관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해관총서는 대외 무역의 순조로움과 수출식품 검사검역 업무 필요에 따라 기타 지점을 지정하여 검사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 수출식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는 법률, 행정법규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생산지 또는 화물 조합 지역(組貨地) 해관에 수출 신고 전 감독관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지 또는 화물 조합 지역 해관은 식품 수출 신고 전 감독관리 신청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검사·검역 실시가 필요한 수출식품에 대해 현장검사와 샘플링검사 감독을 실시한다.

제50조 해관은 연도 국가 수출식품 안전 샘플링검사 감독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한다.

제51조 수출식품이 해관의 현장 검사와 샘플링검사 감독 결과,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해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허가한다. 수입국가(지역)에서 증명서의 양식과 내용 요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해관총서의 동의를 받고 증명서의 양식과 내용에 대해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출식품이 해관의 현장검사와 샘플링검사 감독 결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관은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관련 수출식품이 기술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기술처리 합격 후 수출을 허가하고 기술처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것은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2조 식품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식품을 수출할 때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53조 해관은 항구에서 수출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불합격인 것은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4조 수출식품이 안전문제로 국제조직, 해외 정부기관으로 통보받을 경우, 해관총서는 심사 개시를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샘플링검사 감독 비용 조정, 식품 수입업체가 로트별로 해관에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검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 해외 공식 주관 기관에 추천한 등록을 회수 등 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55조 수출식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고 이미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식품 제조·경영자는 신속히 대응책을 취해 손해를 면하고 감소해야 하고 소재지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6조 해관이 수출식품 감독관리 실시할 때 안전 문제 발견 시, 동급 정부와 상급 정부 식품안전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57조 해관총서는 <식품안전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해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 관리제도를 세운다.

각 행정등급 해관은 관할구역 내 및 상급해관이 지정한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의 수집과 정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지방 정부, 유관 부처, 기관과 기업에 통보한다. 통보 내용이 기타 지역과 연관이 있는 경우, 동시에 유관 지역 해관에 통보한다.

해관이 수집하고 취합한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는 <식품안전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내용 외, 해외 식품 기술성 무역 조치 정보도 포함한다.

제58조 해관은 수집한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에 대해 리스크 연구·판단을 개시하고 연구·판단의 결과에 따라 상응 통제 조치를 확정한다.

제59조 국내, 해외에 식품 안전사건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출입식품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수출입식품에 엄중한 식품안전 문제 발견 시, 직속해관은 제때에 해관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상황에 따라 리스크 경보를 내고 해관 시스템 내에 리스크 경시(警告) 통보를 하며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서에 통보한다. 필요 시,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경시 통보를 한다.

해관총서에서 리스크 경시 통보한 것은 리스크 경시 통보 요구에 따라 수출입식품에 대해 본 방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한다.

제60조 해관총서는 연도 국가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감측 계획을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식품 중 식원성 질병, 식품 중 오염과 유해 요소의 감측 수치 및 유관 정보를 수집한다.

제61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사건이 중국 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평가 후 통제불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경우, 해관총서는 국제 통용 방법을 참조하여 직접 해관 시스템 내에 리스크 경보 통보 또는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경보를 알릴 수 있고 본 방법 제34조, 제35조와 제36조 규정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2조 해관은 수출입식품 안전 돌발사건 응급처치 방안을 작성하고 시행한다.

제6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 (1) 제조·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
- (2) 제조·경영 중인 식품에 대해 샘플링검사를 진행
- (3) 유관 계약서, 증빙, 장부 및 기타 유관 서류의 검열과 코피
- (4)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또는 안전 우려 및 위법으로 제조·경영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식품을 차압, 압류
- (5) 위법으로 제조·경영을 재개하는 장소의 차압

제64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업체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65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 제조·경영자 및 서류등록 재배·양식장에 대해 검사, 심사를 개시한다.

제66조 경유 식품은 경유 화물에 대한 해관총서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경유 식품의 경유 기간, 해관의 허가없이 포장을 뜯거나 운송도구에서 하역해서는 아니 되며 규정 기한 내에 국경 이외로 운송해야 한다.

제67조 수입식품 제조·경영업체가 해관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출입상품 재검사 유관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재검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 (1) 검사 결과, 미생물 지표가 기준치 초과한 경우
- (2) 재검사용 예비 샘플의 유통기한이 초과한 경우
- (3) 기타 원인으로 예비 샘플이 재검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제5장 법률 책임

제68조 식품수입업체 서류등록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변경수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상황이 엄중한 것은 해관이 경고 조치를 한다.

식품수입업체가 서류등록 과정에 허위 서류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관은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69조 국내 수출입식품 제조·경영자가 해관의 수출입식품 안전 심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심문, 서류 제공을 거부하며 또는 답변 내용과 제공한 서류가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경고 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해관이 수입 선포장식품 감독관리 중 수입 선포장식품이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식품수입업체가 해관의 요구에 따라 소각, 반송 또는 기술처리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해관은 경고 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해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수입식품을 해관이 지정한 또는 인정한 감독관리 장소에서 이전하는 경우, 해관은 시정을 요구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다음 위법 행위 중 〈식품안전법〉 제129조 제1조목 제(3)항에서 규정한 '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 수출'하는 행위에 속하는 경우, 해관은 〈식품안전법〉 제124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해관의 샘플링검사 감독을 거쳐 이미 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수출식품을 무단으로 교체한 경우

(2) 불량 혹은 가짜가 뒤섞인 식품, 가짜를 진짜로 속이거나 불량을 우량 식품으로 기만한 식품 또는 불합격 수출식품을 합격 수출식품으로 사칭하는 경우

(3) 서류등록되지 않은 수출식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4) 등록 요구가 있는 국가(지역)로 등록되지 않은 수출식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식품 또는 등록된 수출식품 제조업체에서 등록범위 외의 식품을 제조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5) 수출식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수출식품이 규정에 따라 서류등록한 재배·양식장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수출식품 제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규정의 정황이 존재하고 수출식품이 수출국가(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7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에 도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74조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 시장 구매, 변경소액 무역(邊境小額貿易)과 변경무역(邊民互市貿易) 수출입식품 안전감독 관리는 해관총서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5조 우편, 택배, 역직구 전자상거래 및 여객 핸들링 등 방식의 수출입식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는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6조 샘플, 선물, 증정품, 진시품, 구호품 등 비즈니스 용도가 아닌 식품, 면세 경영하는 식품, 외국 주중국 대사관/영사관 및 인원들이 출입경 공용, 개인용 식품,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영사관 및 인원들이 공용, 개인용 식품, 중국기업이 외국에 주재하는 인원들이 개인용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는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7조 본 방법에서 언급된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기업, 해외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 수출식품 생산업체, 수출업체 및 관련 인원들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 가공, 저장 기업 등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수입식품의 수출입업체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가 포함된다.

제78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79조 본 방법은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9월13일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4호에 의거하여 공표되고 2016년10월18일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84호 및 2018년11월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하여 수정된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2000년2월22일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0호에 의거하여 공표되고 2018년4월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에 의거하여 수정된 〈수출 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2011년1월4일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5호에 의거하여 공표되고 2018년11월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하여 수정된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1년1월4일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6호에 의거하여 발표되고 2013년1월24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하여 수정된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7년11월14일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2호에 의거하여 발표되고 2018년11월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하여 수정된 〈수출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은 동시 폐지한다.

끝.